

## 박창호 장학금 운영 내규

2012. 12. 11 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대한교통학회와 대한토목학회에서 관리하는 '박창호 장학금'의 장학기금 운영과 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박창호 장학금 운영위원회)

1.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창호 장학금 운영위원회를 둔다.
2. 박창호 장학금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은 대한교통학회와 대한토목학회의 회장이 공동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위원회의 성립은 위임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회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박창호 장학금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박창호 장학기금 기본자산 추가조성방안 강구
  - 2) 박창호 장학기금 운영
  - 3) 기타 장학기금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제3조 (박창호 장학금 심의소위원회)

1. 박창호 장학금 지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창호 장학금 운영위원회 산하에 박창호 장학금 심의소위원회를 둔다.
2. 박창호 장학금 심의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심의위원을 두며 심의위원은 박창호 장학금 운영위원장이 위촉하며 박창호 장학금 심의소위원장은 호선한다. 박창호 장학금 심의소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회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의결사항은 박창호 장학금 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3. 박창호 장학금 심의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액 결정에 관한 심의
  - 2) 기타 장학기금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

**제4조(박창호 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박창호 장학금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통 및 토목 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포함)으로 한다.

**제5조(박창호 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액은 매년도 박창호 장학금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박창호 장학금 선정대상)** 선정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학 중인 해당 대학의 학과장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교통 및 토목에 관련하여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
2. 교통 및 토목 분야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3. 기타 박창호 장학금 심의소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제7조(박창호 장학금 신청)** 박창호 장학금 신청자는 신청 기간 중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대한교통학회 또는 대한토목학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각 학회는 이를 장학금 심의소위원회에 전달한다.

1. 장학금 신청서
2. 전(前)년도 성적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증명서
3. 기타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8조(박창호 장학금 지급기간)** 장학금 지급기간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일 년 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박창호 장학금 지급중지 및 회수)** 장학생으로 선정되거나 장학금 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한다.

1. 장학금 신청절차와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때
2. 대한교통학회 또는 대한토목학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을 때
3. 박창호 장학금 지급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제10조(결과 보고)** 박창호 장학금 운영위원회는 매년 장학기금 운영 결과를 대한교통학회와 대한토목학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부칙

본 내규는 대한교통학회 상임이사회와 대한토목학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본 내규의 개정은 박창호 장학금 운영위원회에서 대한교통학회 상임이사회와 대한토목학회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